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61 발의연월일: 2024. 11. 1.

발 의 자:진선미・이기헌・문정복

임광현 · 윤종군 · 김한규

채현일 • 모경종 • 정동영

조 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,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」(소방청훈령)에서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.

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

임(안 제1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) ① 소방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예방접종의 시기·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6조의2(소방공무원의 감염병
	예방) ① 소방청장은 감염병으
	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
	<u>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</u>
	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예방접종의 시기・항목 등
	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
	<u>한다.</u>